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6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 : 엄태영 • 박덕흠 • 유상범

서천호 · 이달희 · 강명구

권성동 • 구자근 • 권영진

김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,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.

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 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농약 등의 판매업(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을 말한다)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32조(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	제32조(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				
한)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	한) ①				
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					
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		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					
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. 다					
만,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				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		
<u><신 설></u>	2의2. 농약 등의 판매업(「농약				
	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				
	판매업을 말한다)을 하는 데				
	필요한 시설의 설치			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	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	